



제 40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401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406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407호)

2023.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 영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 등에 청년을 추가	5
※ 참고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9

I. 제안경위

1.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401호)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나. 제 안 일 : 2022. 11. 23.

다. 회 부 일 : 2022. 11. 24.

2.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406호)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나. 제 안 일 : 2022. 11. 23.

다. 회 부 일 : 2022. 11. 24.

3.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407호)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나. 제 안 일 : 2022. 11. 23.

다. 회 부 일 : 2022. 1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401호)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 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2.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406호)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3.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407호)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

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 등에 청년을 추가(김성원 의원안(제2118401호) 제17조의2 및 김성원의원안(제2118406호) 제37조, 김성원의원안(제2118407호) 제5조제2항제2호다목)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참여의 촉진과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중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에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관한 투자·보조·출연·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건의 개정안은 그 대상에 “청년”을 각각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¹⁾²⁾.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대상인 청년의 범위는 사업별 차이가 존재하나 대략 40세 미만으로,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보다는 범위가 다소 넓음.

현행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u>아동과 청소년</u>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 ----- <u>아동·청소년·청년</u>-----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농촌여성의</u>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u>농촌여성의</u>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u>농촌여성</u>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농촌 청년·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u>농촌 청년·여성</u>----- ---- <u>농촌 청년·여성</u>----- ----- <u>농촌 청년·여성</u>-----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가·나. (생략)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산어촌 여성 및 <u>아동</u> 의 복 지 증진 라. ~ 아. (생 략) 3. ~ 9. (생 략)	다. ----- <u>아동·청년</u> ----- 라. ~ 아.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삶의 질을 제고하여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하게 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³⁾과 관련된 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판로지원, 지구 조성 및 소규모 사업자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건의 개정안은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농어촌 지역의 청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경영체와 마찬가지로 창업·경영 기반이 취약한 청년 경영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을 농어촌지역의 청년 복지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⁴⁾.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외에도 여성과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추가하여 지원사업 또는 홍보·교육사업 추진 시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개정이 최근 이루어진 바 있어⁵⁾,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이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417

4)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5) 2022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111호)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6)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사유로 인해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본예산	증감	%	
◇ 합 계	925,735	947,339	21,604	2.3	
I 청년농업인 유입	29,812	18,977	△10,835	36.3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870	5,283	△587	△10.0	·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한 체계적 농업교육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갖춘 농업 전문인력 육성(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계대학지원)	4,755	4,489	△266	△5.6	· 농업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연계 교육을 통한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 농업계 학교 실습장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영농기술교육)	17,982	8,000	△9,982	△55.5	· 스마트팜 영농기술 습득을 원하는 청년대상 실습 위주 장기교육 → 장기실습교육(20개월) 기존 현장실습 경영실습을 통한 스마트팜 청년력형성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1,205	1,205	-	-	· 만 39세 이하 귀농 희망 청년층에게 장기실습교육 지원
II 초기 정착단계	888,112	921,199	33,087	3.7	
① 경영지원	7,680	7,680	-	전년동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청년농업투자심층컨설팅)	480	480	-	전년동	· 2040세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을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분야취창업연계 장학금)	7,200	7,200	-	전년동	· 청년층의 농업농촌분야 진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
② 기술(교육)지원	2,190	2,301	111	5.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청년후계농업인 교육지원)	2,190	2,301	111	5.0	· 청년후계농업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에게 맞춤형 영농경영 및 기술교육 등 지원
③ 생계·정착지원	811,033	852,013	40,980	5.1	
청년후계농업농정착지원	33,538	38,899	5,361	15.9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맞춤형농지지원	771,785	812,314	40,529	5.3	· 고령은퇴직업전환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영농경력규모연령 등에 따라 청년농·귀농·일농 등에게 맞춤형으로 농지지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5,710	800	△4,910	△90.0	·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개소당 30호 내외)
④ 장비·시설지원	52,196	45,500	△6,696	△12.8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경영실습임대농장)	4,500	4,500	-	전년동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임대형 스마트팜	47,696	41,000	△6,696	△14.0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절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재배역량 향상, 영농 경험의 기회 제공
⑤ 용자지원	15,013	13,705	△1,308	△8.7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 (이차보전)	15,013	13,705	△1,308	△8.7	·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예정자 포함)의 후계 농업인에게 영농기반(농지·시설 등)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용자) * 최대3억원, 연리2%,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III 정착 후	7,811	7,163	△648	△8.3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2040스텝업기술교육)	811	811	-	전년동	· 중급수준의 청년농을 고급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품목별 문제해결형 기술교육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본예산	증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지원 (이차보전)	7,000	6,352	△648	△9.2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중 영농 경영 우수 농업인에게 영농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융자) * 최대2억원, 연리1%,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